

「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6년 1월 6일

나. 발 의 자: 양진오, 김낙관, 김원섭, 김춘남, 소진혁
신용하, 장세구, 정지원 의원(8인)

다. 찬 성 자: 강승수, 김근한, 김민성, 김영길, 김영태,
박세채, 이지연, 장미경, 추은희 의원(9인)

라. 회부일자: 2026년 1월 6일

마. 상정일자: 2026년 1월 14일

제29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양진오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필수적인 소형 농업기계 구입 지원을 위해 보조금 300만 원 이하의 기종에 한해서 지원 제한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기 위함

다. 주요내용

- 농업기계 구입 보조금 신청 제한 기간 조건부 변경
(안 제3조제1항제1호)

라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」 제8조제2항제8호

○ 기 타 : 조례안 예고(2026. 1. 6. ~ 1. 12.) 결과 의견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임 호 규

○ 본 조례안은

- 농업기계 구입에 따른 보조금 지원 조건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안 제3조제1항제1호에서 농업기계 구입 보조금을 지원 받은 후 5년이내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던 것을 300만 원 이하는 3년, 그 외는 5년으로 차등 적용하도록 개정 하였음.
- 중·소형 농업기계 구입 지원 현황을 보면 300만 원 이하 소형 농업기계가 2024년도에 약 98%, 2025년에는 약 80%를 차지하고 있음.1)

1) 중소형 농업기계 구입 지원 현황(출처 : 구미시 농업정책과)

	전체 지원 대수	300만 원 이하	300만 원 초과
2024년	338대	331대 (98%)	7대 (2%)
2025년	287대	229대 (80%)	58대 (20%)

- 해당부서에서는, 지원 기준 변경에 따른 내용을 농업인들이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가 필요하며,
- ‘평가심사표’ 적용 시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금이 골고루 지원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